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2299**

제출연월일 : 2021. 8. .

제 출 자: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2020. 12. 22.)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(안 제2조)

- 민간위원 정원 확대 : 3명 → 5명(위원회 총 정원 : 5명 → 7명)
- 민간위원 자격 요건 : 법관 → 판사·검사·변호사
- 위촉직 위원 성비 의무규정 적용 : 단서 신설
- 나.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내용 추가 (안 제10조)
 - 전년도의 제출서류 : 선물신고 →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, 선물신고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1. 6. 9. ~ 2021. 6. 29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조사담당관

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5인"을 "7명의 위원"으로, "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"를 "각 호에 따라 하남시장이 위촉하거나"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3인의 위원은 관내의 법관,"을 "판사·검사·변호사,"로, "시민단체"를 "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"로, "위촉한다."를 "5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1명
- 3.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"를 "각 호와 같이 정한다.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"를 "위원 중에서 호선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

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

제6조제3항 각 호의 부분 중 "관하여는 못한다"를 "**관여하지 못한다**"로 한다.

제10조 중 "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"을 "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·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, 선물신고,"로, "감독"을 "감독,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청렴감사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청렴감사관 이 정 훈
	팀장 직위·성명	청렴팀장 윤 정 심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장 명 신 (790-5293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아 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제2조 (구성) ① -----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 ----- 7명의 위원-----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 ----- 각 호에 따라 하남시장 이 위촉하거나 -----. 다만, 위촉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단서 신설> 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1. 3인의 위원은 관내의 법관, 교육자, 1. 판사·검사·변호사,-----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다. 한다)----<u>5명</u> 2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2. 2인의 위원은 하남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의원 1명 한다. <신 설> 3.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 ----- 각 호와 같이 정한다. 한다. 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 1. ----- 위원 중에서 호선 임하여야 한다. 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 선임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<삭 제>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회의 등) ①・② (생 략) 제6조 (위원회의 회의 등) ①・② (현행과

-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 회의 심사 · 의결에 관하여는 못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④ (생 략)
- 제10조(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 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 도의 재산등록 ·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 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<u>감독</u>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같음)

- ----- 관여하지 못한다.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) ---------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 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・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, 선물신고, ---- 감독, --